

# 보호위, 개인정보보호법

##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.01.06

1. 개인정보 침해사고시  
**‘전체 매출액’ 기준 과징금 3% 부과,**  
GDPR 수준으로 과징금 강화
2. 개인정보 형사처벌은  
**본인 혹은 제3자 이익목적**으로  
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해당
3.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
4.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
5. 보호위가 인정하는 **안전한 국가/기관**으로는  
**동의없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** (GDPR 국외 이전제도)



이

## 개인정보 침해사고시 '전체 매출액' 기준으로 과징금 3% 부과 [안 64조의2]

- 기존 법령은 '위반행위 관련' 매출액 3% 부과,  
(주민등록번호 유출은 5억원 이하 과징금)
- 부과대상은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  
→ '개인정보처리자'로 확대
- GDPR 수준으로 과징금 강화  
(GDPR: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% 과징금 중 높은 금액 부과)
-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

## 02



# 개인정보 형사처벌은 본인 혹은 제3자 이익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[안 73조]

-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 
개인정보처리자에게 형사처벌을 묻지 않음
-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목적으로  
개인정보를 탈취한 경우  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## 03



#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

[안 28조의2, 28조의7, 60조]

-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**NEW**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
- 가명정보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파기

## 04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[안 35조의2]

---

정보주체는 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 
기업/기관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 
자신, 기업/기관,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 
전송/전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

## 05 보호위가 인정하는 안전한 국가/기관으로는 동의없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 [안 28조의8, 28조의9]

---

- EU GDPR 국외이전제도 반영
-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 
국외이전하거나  
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경우 중지명령

원문 출처: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

입법예고 - 2021.01.16 게시글

**PRIVACY REPORT**

[www.somansa.com](http://www.somansa.com)